

## 2024년도(제30회) 법무사 형사소송법(총평)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할 때 문제 전부가 모의고사에서 3번, 2번 이상 다루었던 사안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각설하고, 올해 형사소송법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1】은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과 필요적 변호사건과 항소심의 조치에 관련한 대판 2015.12.24. 2015도10544, 【문 2-1】은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8 등, 【문 2-2】는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판(全合) 2018.11.22. 2015도10651[다수의견], 【문 3】은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문 4】는 압수 완료 후에는 무관정보는 삭제·폐기 등 하여야 하고,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복제한 것은 위법하여 사후영장 등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대판 2023.10.18. 2023도8752, 대판 2024.4.16. 2020도305 등과 관련하여 출제되었습니다.

【문 1】, 【문 2-1】, 【문 3】 및 【문 4】는 2·3순환 또는 1순환 등 모의문제로, 같은 문제를 왜 계속 출제하나냐는 약간의 비난도 받았지만, 저의 고집으로 반복 출제하여 혼란하였던 문제들입니다. 특히 【문 4】는 수험생 몇 분의 현명한 요청으로 시험 전날 자료 게시판에 올린 2024년 법행 문제 1문(25점)이 간략한 사실관계로 출제되어 여러분의 신기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문 2-2】는 작년도에 15점으로 출제되었던 2018년 전합이 5점으로 위장(?) 출제되어, 수험현장의 여러분에게는 약간의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약간의 운도 작용하겠지만, 뿌린 만큼 거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을 계획하며 잠시나마 편한 마음으로 자유스러운 공기를 만끽하기 바랍니다.

서울법학원·박문각 김영환 올림